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62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3
나. 제정안의 입법배경	5
다. 총괄적 검토	8
라. 관계부처 의견	10
2. 조문별 검토	11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1
나. 피해지역 지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16
다. 지원금 지급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9
라.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24
마. 부칙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4.
3. 회부연월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함(안 제5조).

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안 제8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명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여, 본칙 4장 총 17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정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피해지역 지정 등	제5조	피해지역 지정·고시 등
	제6조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
제3장 지원금 지급 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제10조	이의신청
제4장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11조	집회등피해보상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2조	피해지역 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제14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5조	조세 감면
	제16조	피해지원 점검 및 평가
	제17조	권한의 위임

조 문		규정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유효기간

제정안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하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시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 대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지역 지정과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급 대상, 신청, 지급 결정 등 관련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¹⁾,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함²⁾.

집회·시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기제이자, 소수자의 의견을 가시화하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의의가 있으며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음³⁾.

집회·시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한 우월성격이 인정되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⁴⁾, 이를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박진완,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제한의 한계」, 『공법연구』 제32권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

별칙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조례로써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시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⁵⁾).

<확성기등의 소음기준⁶⁾>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 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최근 경찰력 동원 집회·시위가 지속적으로 1만건 이상 기록되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집회·시위가 이루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간 충돌이 지속적으로 문제된바 있음.

<경찰력 동원 집회시위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찰력 동원 집회시위	13,864	12,465	10,300	10,293	10,431	10,287

※ 자료 : 경찰청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개최된 집회·시위 현황>

기간	신고건수	개최건수
'24.12.3.~'24.12.31.	591건	209건
'25.1.1.~'25.1.31.	641건	163건
'25.2.1.~'25.2.28.	587건	211건
'25.3.1.~'25.3.31.	645건	288건
'25.4.1.~'25.4.30.	456건	190건
합계	2,920건	1,061건

※ 자료 : 경찰청

다. 총괄적 검토

제정안은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및 부담금 면제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 신청과 결정 절차를 규정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장기·반복적 집회 및 시위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임.

다만, 피해지역 내 주민과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타 피해인원과의 형평성 및 해당 피해의 국가책임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라는 기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과 광화문광장 인근지역 외 집회·시위로 피해가 발생한 타 피해주민과 「헌법」 제11조⁷⁾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소음 발생 주체가 해당 인근 주민 피해에 관하여 우선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 여부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제정안은 한정된 기한 내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하

7)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 해당 주민을 상대로 국가 차원의 보상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인바, 피해주민들이 집회·시위로 인하여 입법작용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적으로 수인 또는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라. 관계부처 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에 관하여 국가 책임 여부가 불명확하고 공익과 관련된 피해로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및 유사 피해 발생 지역 주민과 출퇴근자와 같이 해당 자치구 비거주자의 피해 관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법과 유사한 제정안으로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⁸⁾과 관련하여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⁹⁾에서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회·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지원금 규모 등은 실태조사 및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음.

8)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의원 대표발의, 2210276)

9) 국회예산정책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 8.14.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안은 제명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시위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또한 ‘집회등’, ‘피해지역’, ‘피해주민’과 같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시위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집회등이 발생한 당시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지역 생활환경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2조) 제정안은 ‘집회등’을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로 규정하고 있고, ‘피해지역’을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을 집회등이 발생한 당시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 혼란,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¹⁰⁾

집회등은 일반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¹¹⁾를 의미하나 제정안은 동법의 신고요건 외에도

1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일정기간 동안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진 옥외집회 및 시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집회등”의 정의규정은 제정안의 입법 취지상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진 옥외집회 및 시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주민을 주민등록법상 거주민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 일대에서 출퇴근 등을 통해 생활 관계를 맺고 있는 비거주 피해자 등이 배제되고 있어 피해보상의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여 보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 서울 시내 집회 발생 건수는 총 19,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정안이 명시한 기간 외에도 집회·시위가 지속되었고, 그 장소 또한 광화문 일대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음을 시사하고 있어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기간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안 제3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

동 규정과 관련하여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¹²⁾,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의 경우도 ‘직무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 유무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³⁾.

예를 들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¹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¹⁵⁾ 등에 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익목적 달성에 수

1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반되는 피해로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은 집회·시위의 신고자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고, 국가의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피해의 국가 책임 여부에 관하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발생 주체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보상 책임이 있고 해당 피해가 국가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는 점 및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한 공익적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4조) 제정안은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인 성격¹⁶⁾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함.

1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

나. 피해지역 지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까지)

제정안은 피해지역 지정·고시 등(안 제5조),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안 제6조)로 구성되어 피해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5조(피해지역 지정·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제6조에 따른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피해지역이 지정된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피해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 ①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 제6조에 따른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가 피해주민에 관한 보상 등의 주무부처가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부처 소관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규정¹⁷⁾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피해주민에 관한 보상 등을 담당하는 경우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안 제6조) 제정안은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제정안에 따른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로¹⁸⁾ 동법에

17)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의 경우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이에 피해지역을 확정하고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위해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동 규정은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다. 지원금 지급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정안은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안 제7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안 제8조), 지원금의 환수(안 제9조), 이의신청(안 제10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 지급 및 신청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지원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제 정 안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안 제7조) 제정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양태, 피해지역의 범위 확정 등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¹⁹⁾ 및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²⁰⁾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²¹⁾을 감안할 때 입법례²²⁾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등 협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1) 예를 들어, 집회·시위 관련 자료는 경찰청이, 피해지역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청이 보유하고 있음.

22) 「전자정부법」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보상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 수령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을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 운영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금이 실패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함.

다만, 제정안 제8조는 피해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명확한 구분 없이 관련 사항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유보원칙’과의 정합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²³⁾에 비추어 볼 때 미비한 측면이 있는바, 「12·29여객기참사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3)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²⁴⁾의 입법례와 같이 지원금의 종류 및 산정 원칙 등 핵심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세부 절차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²⁵⁾ 제정안은 이의신청의 기간의 경우 처분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있어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이 아닌 60일 이내에 통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상의 통지 기한보다 연장된 기한을 마련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상 규정보다 연장된 기한 내 통

2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5)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불복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

제정안은 집회등피해보상사업의 계획수립 등(안 제11조), 피해지역 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안 제12조), 주민지원사업의 실시(안 제13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안 제14조), 조세 감면(안 제15조), 피해지원 점검 및 평가(안 제16조) 및 권한의 위임(안 제1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집회등피해보상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이하 "보상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상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지역 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2.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3. 등하교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실시) ①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15조(조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지원 점검 및 평가)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결과 공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특별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안 제11조)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피해보상에 있어 명확한 지원을 확보하고 일회성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소음피해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해당 규정은 소음 피해 등에 따른 하절기 주거 환경 저해를 방지하고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²⁶⁾ 등 유사 입법의 취지와 같이 피해주민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 및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보상사업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이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효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 제정안은 피해지역 내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회·시위로 인한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실효적인 학습 인프라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²⁷⁾의 실질적 구현을 도모하려는 입법적 조치로 판단됨.

2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7)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학교'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명확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²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근 학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한바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 유사 입법례²⁹⁾와 같이 학교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대체 학습공간'의 명확화 역시 요구될 것으로 보임.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의 범위가 인근 스터디카페 이용료 지원인지, 혹은 임시 교사(校舍)의 확보인지에 따라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이 상이한바, 지원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법률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한 후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셋째,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지원과정에서 서울특별

28)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9)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향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향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시 교육감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감의 전권 사항³⁰⁾으로 교육자치의 원칙을 준수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상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와 유사하게 교육지원사업 시에도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을 복지·생활환경·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집행 방법을 대통령령 및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하며, 관련 시설물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를 통해 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임.

본 규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 외에도, 맞춤형 복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지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실행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집회·시위 피해가 해당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법을 제정하여 복지사업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은 국가 자원 배분의 형평성 및 법 적용의 보편성 차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해당 규정이 국가의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 사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민간주체의 집회·시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상 책임의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국가 재정 투입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 제15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해주민들이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조세특례 및 지방세특례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³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³²⁾ 등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바, 기타 개별 법률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직접 조세감면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선제적 개정을 통한 법체계상의 정비가 요구될 것 보임.

(안 제16조) 제정안은 피해지원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피해지원 과정의 정기적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3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이하 생략)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안 부칙 제1조)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령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부칙 제2조) 제정안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이 한시법의 형태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이 유효기간을 규정하면 별도의 폐지 절차가 부재하더라도 예정된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법률은 효력이 소멸되는바, 당초 정책의 한시적 이행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유효기간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유효기간 규정은 바람직하여 보임³³⁾.

다만, 법률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당 법률에 따라 진행되던 각종 행정작용 및 사무 등을 계속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의 경과조치에 관한

3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³⁴⁾,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지급, 환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6

34)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